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255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7일
제안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 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2011년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의료법」 개정으로 종전에 제1종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된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이 금지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, 국토계획법 시행령)」 제85조제3항제1호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삭제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함 (안 제27조 신설)
- 나.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유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20년 이상 임대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20퍼센트 인센티브 적용함 (안 제55조제14항)
- 다. 임대유기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인센티브 10퍼센트를 적용함 (안 제55조제14항제3호 신설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의 의뢰시설 중 요양병원(「의료법」 제3조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)

제55조 제14항 중 “임대주택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용적률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.”를 “임대주택 유형별 임대 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 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1호를 적용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5조 제1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임대 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: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